

대전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단1216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1055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단121626 판결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1. 20.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8. 7. 25. 체결한 매매계약은 36,041,8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6,041,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 C는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제1신용보증	2014.05.14.	2015.05.14.	80,000,000원
제2신용보증	2016.11.28.	2017.11.28.	288,000,000원
제3신용보증	2016.11.28.	2017.05.19.	95,000,000원
제4신용보증	2017.05.19.	2019.05.17.	180,000,000원

나. 원고는 위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보증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각 변경되었다.

보증	발급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신용보증 조건변경	
				보증금액	보증기한
제1보증	2014.05.14.	2015.05.14.	80,000,000원	68,000,000원	2019.05.10.
제2보증	2016.11.28.	2017.11.28.	288,000,000원	변경 없음	2019.11.27.
제3보증	2016.11.28.	2017.05.19.	95,000,000원	90,000,000원	2019.05.17
제4보증	2017.05.19.	2019.05.17.	180,000,000원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다. 소외 회사는 위 각 보증서에 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제1보증에 대하여는 2019. 5. 11.자로, 이 사건 제2 내지 4보증에 대하여는 2019. 5. 18.자로 각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위 각 보증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다.

보증	대출일	과목	대출금액	채권기관
제1보증	2014.06.17.	일반자금대출	80,000,000원	E은행
제2보증	2016.11.30.	일반자금	320,000,000원	F은행
제3보증	2016.11.30.	일반자금	100,000,000원	
제4보증	2017.05.1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	

라. 1) 원고는 위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대위변제하여 소외 회사와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증	채권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대위변제금 잔액
제1보증	E은행	2019.06.27.	68,850,624원	0원	68,850,624원
제2보증	F은행		289,491,381원	1,931,570원	287,559,811원
제3보증			90,715,847원	0원	90,715,847원
제4보증			180,689,750원	0원	180,689,750원
합계			629,747,602원	1,931,570원	627,816,032원

2) 또한 원고는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C에 대하여 9,033,499원(=제2보증 확정손해금 529원+제1보증 추가보증료 166,360원+제3보증 추가보증료 187,390원+제4보증 추가보증료 374,790원+대지급금 302,43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C는 2018. 7. 25. 피고(소외 회사의 전 사내이사였던 B의 어머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G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채권최고액 84,000,000원, 실제 채무액 60,958,161원)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위 매매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대전 대덕구 H아파트 I호(취득일 2017. 2. 1., 거래가액 218,000,000원)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2. 1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2019. 1. 6.자 매매(거래가액 224,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경영하던 소외 회사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2018. 12. 28. 소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연체가 발생하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는 2019. 1. 16.자로, E은행에 대하여는 2019. 5. 10.자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2019. 5. 11.자로, F은행에 대하여는 2019. 5. 15.자로 각 대출금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바, C는 원고 및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연체일인 2018. 12. 28.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인 2018. 7. 25.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19. 6. 27.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C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는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계약 이후에 G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C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기는 하나,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2018. 7. 25.로부터 약 10개월 지난 2019. 5.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6.경에서야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대출원리금 납부 또는 직원 급여 지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자인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길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J, K에 있는 L아파트 M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N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72.0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J 대 5443.6㎡

2. 대전광역시 대덕구 K 대 1904.1㎡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 비율 : 7347.7분의 34.07